

## 학부모의 권리 - 특수교육 관련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34 C.F.R. § 300, 이하에 따라 각 학교는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에게 IDEA 및 미국 교육부 규정 하에 모든 절차적 보호조항을 명시하는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

“지역교육기관(Local Education Agency(LEA))”, “공공 기관”, “기관”, “지역 시스템” 또는 “시스템”은 공립 비영리 자율 학교를 포함해 적격 학생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지아 주에 의해 지정된 학교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학부모”란 용어는 생물학적 부모 또는 양부모, 수양부모, 아동을 위해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후견인, 생물학적 부모 또는 양부모(조부모, 의부 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를 대신하여 행동하며 아동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아동의 복지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선임된 대리인을 포함하여 IDEA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넓은 정의의 학부모를 가리킵니다.  
(34 C.F.R. § 300.30)

이 통지서 한 부를 한 학년에 한 번만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도 한 부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최초 위탁 시 또는 학부모가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요청할 시, (2) 학생의 학교 관련 최초의 정식 서면 진정서 접수 시, (3) 어떤 학년에서 학생의 학교 시스템과 관련한 최초의 적법절차 진정서 접수 시, (4)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 정계 조치를 취할 결정이 내려질 때, (5) 학생 또는 학부모의 공공 보조금 또는 보험을 최초로 이용하기 전, (6) 학부모 요청 시. [34 C.F.R. § 300.504(a)]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에 위탁되었거나 또는 이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학부모와 그 자녀는 주 및/또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아래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거나 다른 언어로 필요하거나 또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의 학교 또는 학교 시스템에 설명을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 정보의 기밀 보장:

귀하 자녀가 IDEA에 의거한 자격 있는 장애아동이라는 사실, 그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및 기타 개인적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대외비이며 시스템이 적법한 알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그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으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 또는 그룹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외비 정보가 공개될 때와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1. (a) 1974년 가족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 34 C.F.R. Part 99을 시행하는 연방 규정에 기술된 특정 제한적 경우, (b) IDE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기록이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 공개 동의를 보류하여 자녀의 기록에 대한 제3자의 접근 제한

2. 자녀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는 참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공개 제한
3.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LEA에 위치한 사립 학교에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공개 제한
4. 자녀의 기록에 담긴 정보가 파기되기 전 통지를 받고 사본을 받을 권리
5. 정보가 공개된 대상을 알 권리
6. 본인의 자녀에게 적합하거나 등록 가능한 다른 교육 기관에 보낸 모든 정보의 사본을 검토하거나 수령할 권리

### 기록:

“교육기록”이란 FERPA에 있는 “교육기록”의 정의에 의거한 기록 유형을 의미합니다. 동 규정은 “교육기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교육기록이란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의미한다.

- (1) 학생과 직접 관련된 기록 및
- (2) 교육 기관 또는 기구 또는 이를 대행하는 관계자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  
이 용어는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 기록 생성자의 단독 소유로 유지되거나 단지 개인적인 기억을 둡기 위해 사용되거나, 기록 생성자의 일시적인 대리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허용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기록.
  - (2) 제 99.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교육 기관의 법률 집행부서의 기록.
  - (3)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작성 및 유지되며 교육 기관 또는 기구에 고용된 개인에게 관련된 기록 및 직원으로서의 개인의 자격에서 그 개인에게만 관련된 기록은 다른 목적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인하여 교육 기관 또는 기구에 고용된 개인과 관련된 기록은 교육기록입니다.
  - (4) 18세 이상의 학생 또는 의사,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또는 기타 자신의 전문자격으로 행동하는 인정된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에 의해 설립 및 유지되는 고교후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기록으로서, 학생의 치료와 관련해서만 작성, 유지 또는 사용되고 치료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만 공개되는 기록. 본 정의의 목적에서 “치료”란 치료 교육 활동 또는 교육 기관 및 기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인 활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5) 교육 기관 또는 기구가 학생이 더 이상 재학하지 않을 때 작성 또는 수령하고 개인의 학생으로서의 재학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록.
  - (6) 교사가 회수 및 기록하기 전 동급생이 채점한 시험지의 성적.

교육기록과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학부모의 요청이 있은 후 개별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에 관한 회의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 또는 분쟁 해결 모임 이전, 및 요청 이후 45일 이상을 경과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지체하는 일 없이 자녀의 모든 교육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

2. 귀하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할 권리.
3. 자녀의 기록 사본이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학부모가 그 기록을 조사하거나 검토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공공 기관에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공공 기관이 주법에 따라 학부모가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없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부모는 자녀의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다고 기관이 추정하도록 하는 권리.
5. 한 명 이상의 아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교육기록의 경우 본인의 자녀에 관한 정보만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
6. IDEA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교육기록에 포함된 자녀의 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한 당사자의 이름, 접근 허용 날짜,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목적 등을 포함하는 기록을 공공 기관이 작성하도록 할 권리(학부모 및 참여 기관의 인가된 직원에 의한 접근은 제외).
7. 공공 기관이 비용 없이 교육기록을 조회하거나 검색하도록 할 권리.
8. 기록 사본에 대한 수수료는 학부모가 기록 조사 및 검토 권리의 행사하는 데 사실상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청구됩니다.
9. 기관이 수집, 유지, 사용하는 기록의 모든 형태 및 위치를 알 권리.
10. 기록에 나와 있는 항목에 관한 설명 및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부정확하거나 잘못되었거나 아동의 사생활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록에 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수정 요청을 한 뒤 합당한 시간 내에 기관이 정보를 수정할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13. 기관이 기록 수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수정 거부를 통보 받을 권리와 심의회를 열 수 있는 권리.
14. 기관이 심의회에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되었거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서신으로 통보 받을 권리 및 기록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15. 심의회에서 정보의 수정이 불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정보에 대한 의견 또는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기록에 삽입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통보 받을 권리.
16. 논쟁 대상 기록이 유지되는 한 학부모의 의견을 기록에 유지하고 이러한 기록이 공개되는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

## 외부 교육 평가:

“외부 교육 평가”란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군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유자격 심사원이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공적 경비”란 각 주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 내에서 활용 가능한 주, 지방, 연방 및 민간 차원의 모든 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IDEA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 시스템이 평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거나 평가가 학부모의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C.F.R. § 300.502(a)(3)(i - ii)]

학부모는 해당 학교 시스템이 자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지 한 차례에 걸쳐 공적 경비로 외부 교육 평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적 경비로 자녀의 외부 교육 평가를 요청하면 학교 시스템은 불필요한 지체없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해야 합니다: (a) 자녀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평가가 적절함을 증명하기 위해 심의회를 요구하는 적법절차 진정서 제출, 또는 (b) 학교 시스템이 적법절차 심의회에서 학부모가 획득한 자녀에 대한 평가가 학교 시스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공적 경비로 외부 교육 평가를 제공.

해당 학교 시스템이 심의회를 요청해서 자녀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ALJ))/심의회 심사관에 의해 최종 결정되면 학부모는 외부 교육 평가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나 공적 경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외부 교육 평가를 요청할 경우 해당 학교 시스템은 학교 시스템이 입수한 자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반대하는 이유를 학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시스템은 학부모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적 경비에 의한 자녀의 외부 교육 평가 제공 또는 자녀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평가를 방어하기 위하여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하는 적법절차 진정서 제출을 부당하게 지체할 수 없습니다.

외부 교육 평가와 관련해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유자격 시험관에 의한 외부 교육 평가를 획득할 권리.
2. 공적 또는 사적 경비로 입수되고 학교 시스템의 기준에 부합하는 외부 교육 평가 결과를 (a) 자녀를 위한 적절한 무상공립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FAPE))과 관련한 배치 또는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회의에서 검토시키고, (b) 적법절차 심의회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권리.
3. 외부 교육 평가를 비용 부담 없이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러한 평가에 대해 자녀의 학교 시스템이 적용하는 기준을 학교 시스템에 의해 통보 받을 권리.
4. 학부모가 공공 기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공 기관이 평가를 획득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 하에 공적 경비로 외부 교육 평가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에는 평가장소 및 심사원의 자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은 평가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적절한 FAPE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5. 심의회 과정 중에 ALJ/심의회 심사관이 평가를 요구할 경우 공적 경비로 외부 교육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

## 통지:

“통지”란 제안된 평가, 회의 및/또는 프로그램 또는 자격의 변경에 대해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면 정보 또는 기타 IDEA에 의거한 장애아동 식별, 평가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서면 통지는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보 및 대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통지와 관련하여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학교 시스템이 귀하의 자녀를 위한 적절한 FAPE의 검증, 평가, 배치 및 제공을 착수하거나 변경하기(또는 이를 거부하기) 전에 이를 통지 받고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
2.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국어로 된 서면 통지 또는 주요한 의사소통 형태로 통보 받을 권리.
3. 귀하의 모국어나 그 밖의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언어가 아닐 경우 구두 통역 또는 귀하의 모국어 및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번역되어 통보 받을 권리.
4. 통지서에는 제안된 조치, 제안된 사유, 학교 시스템에 의해 고려된 선택 사항 및 거부된 선택 사항들의 이유 등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5. 학교 시스템이 학교 제안 조치에 대한 근거 또는 거부의 근거로 사용한 각각의 평가 절차, 테스트, 사정, 기록 또는 보고서를 통보 받을 권리.
6. 통지서에는 해당 기관이 제안한 조치 또는 거부 사유의 근거와 관련한 그 밖의 요소들도 기술해야 합니다.
7. 통지서에는 귀하가 선택 가능한 모든 절차적 보호조항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8. IDEA 규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락처를 통지 받을 권리.
9. 학교 시스템이 귀하의 자녀 또는 귀하의 공공 보조금 또는 보험을 최초로 이용하기 전 및 학부모의 동의를 한 번 받기 전과 그 이후 매년 통지 받을 권리.
10. 해당 기관이 자녀를 위한 FAPE의 검증, 평가, 배치 또는 제공을 착수하거나 변경 또는 거부하기 전에 위의 항목 2~8에서 기술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사전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11. 모든 IEP 팀 회의에 참석할 권리. 이 권리에는 (a) 회의를 상호 합의된 시간 및 장소에서 개최하고 (b) 참석 대상자를 통보 받으며 (c) 귀하의 장애자녀에 대한 지식 또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동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12. 귀하의 학교 시스템에서 가능한 경우 모든 통지를 이메일로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 서면 통지, 절차적 보호(부모 권리) 통지 및 적법절차 진정서에 관련된 통지가 포함됩니다.

## 동의:

“동의”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귀하는 본인이 동의하는 조치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모국어 또는 그 밖의 의사소통 방식(수화, 점자 및 구두 등)으로 충분히 통보 받았습니다.
2. 귀하는 해당 조치에 관하여 이해하고 서면상으로 동의하며, 그 동의서는 해당 조치를 기술하고 공개할 기록과(있는 경우) 대상의 목록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3.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동의를 한 후 또는 철회하기 전에 발생한 조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와 관련해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IDEA에 의거하여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초기 평가를 하기 전 동의할 권리. 또한 귀하는 제안된 조치에 대해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사전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 a. 귀하가 동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동의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 시스템은 해당 평가를 입수하기 위해 중재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를 사용하여 초기 평가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의무는 없습니다.
  - b. 초기 평가 동의가 IDEA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 c.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 기관이 평가를 추구하지 않아도 자녀 발견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동의할 권리. 이는 (1) 학생의 재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해당 학교 시스템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고 (2) 학부모가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a. 자녀의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 시스템은 자녀의 재평가를 거부하는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기 위해 중재 및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회를 사용하여 자녀의 재평가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의무는 없습니다.
  - b. 초기 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 시스템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IDEA에 의거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홈 스쿨에 있는 또는 학부모 경비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가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학부모가 동의 제공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중재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a. 공공 기관은 아동의 서비스 적격을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

4. 특수 교육의 초기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 동의할 권리. 학교 시스템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을 위해 학부모로부터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 a. 학부모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대해 대응하지 않거나 동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학교 시스템은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중재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 학교 시스템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동 발견 책임 또는 아동을 위한 FAPE 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 c. 학교 시스템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가 제공되지 않은 아동을 위해 IEP 팀 회의를 개최하거나 IEP를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5. 학교 시스템이 학생 또는 학부모의 공공 보조금 또는 보험을 최초로 이용하기 전에 한번 서신으로 동의할 권리 학부모는 또한 학교 시스템이 학생 또는 학부모의 공공 보조금 또는 보험을 최초로 이용하기 전 및 그 이후 매년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 최초 제공에 대한 동의 후 언제든 학부모가 서면으로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학교 시스템은:
  - a. 귀하의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 중단 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b.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중재 또는 적법절차 심의회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c. 학부모에 의해 동의가 철회된 경우, 적절한 FAPE 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 d. 추가 서비스 지원을 위해 IEP 팀 회의를 개최하거나 IEP를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e. 귀하의 자녀가 받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참고 서류를 삭제하기 위해 자녀의 교육기록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기 전에 또는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아동에게 실시되는 테스트를 시행하기 전에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분쟁 해결:

IDEA의 규정은 주정부 진정 및 적법절차 진정과 심의회에 관한 각각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모든 분쟁 해결의 상세 설명 및 기술은 주정부 위원회 규칙 160-4-7-12 분쟁 해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부 진정 절차

모든 개인 및 조직은 학교 시스템, 주정부 교육 기관(State Educational Agency(SEA))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IDEA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주정부 진정서(주정부 진정서)를 정식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A는 시한이 정당하게 연장되지 않는 한 주정부 진정을 60(력)일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주정부 진정서: 진정서는 IDEA 위반 주장을 명시하는 서명된 서면 진정서여야 합니다. 진정서는 현지 시스템이 IDEA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진술과 이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진정서는 진정서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일(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1. 주정부 진정서를 제출할 때마다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주정부 진정서는 조지아 주 교육부(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GaDOE)) 또는 그 계약자가 조사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 및 관련 공공 기관은 조사 중에 GaDOE에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갖습니다.
3. 주정부 진정서에 대한 결정은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연장되지 않는 한 60(력)일 이내에 GaDOE가 내립니다.
4. 주정부 진정서에 대한 결정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법절차 진정 절차

장애아동의 식별, 평가 및 교육상의 배치를 착수하고 변경하거나 또는 이를 거부하는 문제, 또는 아동에게 적절한 FAPE를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한 적법절차 진정서는 학부모, 성인 연령에 도달한 장애 학생 또는 학교 시스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진정서의 처리를 위해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회 심사관은 학부모나 학교 시스템의 요청에 의해 특별히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본 문서의 “분쟁 해결” 섹션에서 서술되듯이 해결 기간의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적법절차 진정서를 심리하고(분쟁 해결 회의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진정서: 진정서는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진정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조치에 대해 안 날짜 또는 알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이(2)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사항의 주장을 명기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진정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심의회 개최 요구서입니다. 이년이라는 시한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즉 (1) 학교 시스템이 진정서에서 식별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잘못 전달해서, 또는 (2) 학교 시스템이 IDEA의 파트 B에 의거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서 이러한 당사자가 시한 내에 적법절차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적법절차 진정 통지서를 제출할 의무. IDEA에 의거한 적법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학부모 또는 학교 또는 그의 변호사는 상대방(또는 그의 변호사) 및 GaDOE에 적법절차 진정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해당 아동의 이름과 집 주소,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노숙(홈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연락처 정보 및 학교명, 문제의 성격

기술 및 제안한 해결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진정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적법절차 심의회를 열기 전에 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적법절차 진정서를 제출하는 문제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는 통지서를 제공할 의무. 학교 시스템은 학부모의 적법절차 진정 통지서가 불충분하다고 여길 경우 그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의회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a. ALJ/심의회 심사관은 최대 5일 동안 이 통지서가 IDE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 ALJ/심의회 심사관은 즉시 모든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ALJ/심의회 심사관이 진정서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학교는 적법절차 진정서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ALJ/심의회 심사관이 진정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부모는 새로운 진정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한이 적용됩니다.
3. 적법절차 진정서의 주제에 관한 사전 서면 통지서. 학교 시스템은 적법절차 진정 통지서를 받을 경우, 우선 적법절차 진정서의 주제에 관한 사전 서면 통지서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없으면 학교 시스템은 적법절차 진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사전 서면 통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기관이 적법절차 진정서에 기술된 해당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절한 이유 설명
  - b. IEP 팀이 고려한 다른 옵션 및 그러한 옵션이 거절된 이유 설명
  - c. 해당 기관이 제안한 또는 거부한 조치의 근거로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 등에 대한 설명
  - d. 학교 시스템의 제안 또는 거부에 있어서 관련 요인에 대한 설명
4. 분쟁 해결 모임. 진정서가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 시스템은 학부모와 IEP 팀의 관계자들을 소집해 분쟁 해결 모임을 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모임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시스템은 적법절차 진정서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적법절차 심의회를 피하고 해당 아동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거나 분쟁 해결 모임 및 중재를 포기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 해결 모임은 적법절차 심의회가 진행되기 전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 a. 이 모임은 학교 시스템을 대표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 시스템 대표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b. 이 모임은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 한 학교 시스템을 위한 변호사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c. 이 모임을 통해, 적법절차 진정서를 제기한 당사자는 진정 사항과 진정의 근거가 된 사실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상대방은 진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 d.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부모와 학교 시스템 대표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 e. 해당 합의문은 해당 관할권을 가진 주법원이나 미국 지방 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합의문의 시행 이후 최대 삼(3)일 이내에 당사자의 어느 쪽도 해당 합의문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f. 적법절차 진정서가 진정서를 접수하고 30일 이내에 분쟁 해결 모임을 통해 학부모가 만족할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적법절차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회. 적법절차 진정서를 제출할 때마다 당사자들은 GaDOE 또는 GaDOE의 계약된 공정 대리인이 개최하는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의회는 양 당사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비용의 회복권을 승소측에 부여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자신 또는 법률 고문, 전문가 중인 고용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회와 관련하여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자녀의 교육과 연관있는 공공 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또한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심의회에 관심이 있는 ALJ/심의회 심사관이 주관하는 심의회를 열 수 있는 권리(ALJ/심의회 심사관은 공공 기관이 ALJ/심의회 심사관의 해당 직무에 대해서만 급료를 지불하므로 공공 기관의 고용인이 아님).
2. ALJ/심의회 심사관의 목록과 개개인의 자격 설명서를 받을 권리.
3. 심의회에서 법률 고문을 그리고 장애아동의 문제 관련 특수 지식 또는 훈련을 받은 개인을 대동하고 그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4. 학부모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학부모 또는 학교 시스템이 적법절차 진정을 개시할 때 현지 시스템으로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법적 및 그 외의 관련 서비스(예, 심의회에서 중인이 될 수 있는 장애 조건 전문가)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
5. 장애 소견 관련 적법절차 진정서를 제출할 때마다 간이 적법절차 심의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6. 심의회에 자녀와 함께 할 권리.
7. 심의회를 대중에게 공개할 권리.

8. 심의회에 증거를 제출하고 대질, 반대 심문,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9. 본인과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심의회 또는 항소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10. 심의회로부터 최소 오(5)일의 근무일 이전에 각 당사자는 모든 상대방에게 그 날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 및 당사자가 심의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제공측의 평가에 근거한 권고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11. 심의회가 열리기 최소 오(5)일의 근무일 이전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ALJ/심의회 심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2. 심의회에 관한 서면 또는 선택에 따라 전자, 측어식 기록을 받을 권리.
13. 분쟁 해결 모임 이후 4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선택에 따라 전자식 사실 인정 및 판결 기록을 획득할 권리, 단, ALJ/심의회 심사관이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시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4. 당사자가 해당 관할권을 가진 주법원이나 미국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ALJ/심의회 심사관이 결정한 최종 판결의 이행 권리. 어느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교육 배치에 머뭅니다. 결정에서 요구된 시정 또는 보상 조치는 모든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 ALJ/심의회 심사관의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ALJ/심의회 심사관의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 또는 연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6. 학부모와 해당 기관이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심의회 및 소송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를 현재 교육상의 배치에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징계 절차, 장애 정후 결정 또는 아동의 현재 배치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학교 시스템이 판단한 경우 등에 따른 배치와 관련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 중에 학부모와 주정부 또는 학교 시스템이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아동은 ALJ/심의회 심사관의 판결이 내려지거나 아니면 규율 준칙 또는 연방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먼저 도래하는 쪽이 적용됨)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17. 적법 절차 진정이 공립학교로의 초기 입학 신청과 관련된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를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

참고: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정후가 아니라는 학교 시스템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정부 진정서 또는 적법 절차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미국 지방 법원은 적법절차 진정 또는 민사 소송의 화해의 일환으로 승소 당사자가 학부모, SEA 또는 지방 시스템이 되었건 관계없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A 또는 지방 시스템에 지급되는 변호사 비용은 일정한 지침에 따라 주어집니다.

1. 학부모의 변호사는 사소한, 비합리적인 또는 근거 없이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또는 소송이 분명히 사소한, 비합리적인 또는 근거 없게 된 후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공공 기관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의 적법절차 진정 또는 이에 따른 민사소송이 부적합한 목적 즉, 위해나 불필요한 지역을 야기하거나 소송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기되었다면 학부모 또는 담당 변호사는 공공 기관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법적 및 행정적 절차와 서비스가 배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법원은 학부모에게 서면 제안한 화해 기간 이후에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 68조에 의거하여 화해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 청문회의 경우 청문회로부터 10일보다 이전에 화해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 b. 화해 제안이 10일 이내에 수락되지 않은 경우.
  - c. 학부모가 획득한 최종 구제책이 화해 제안보다 낫지 않다고 법원 또는 행정 청문회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그러나 화해 제의 거부가 실제적으로 정당한 경우 학부모에게 변호사 비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IEP 팀 회의는 행정 절차 또는 사법 소송의 결과로 소집되었거나 주정부의 재량으로 중재 모임을 위해 소집된 경우가 아니라면 변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5. 분쟁 해결 모임을 위한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로 배상의 자격이 없습니다.

## 중재

학부모, 학교 시스템 또는 모든 당사자는 IDEA에 관련된 불합의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중재는 어느 당사자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 또는 고문의 비용을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에게도 무료입니다.
2. 중재는 자발적입니다.

3. 심의회에 대한 권리를 거부 또는 지체하기 위해 중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중재는 적시에 일정 계획되고 분쟁 당사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5. 중재는 공정하고 주정부가 무작위 선임한 훈련된 유자격 중재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6. 중재 중 논의는 대외비이며 후속 적법절차 심의회 또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7. 분쟁이 중재에서 해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결사항이 명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참고: 분쟁 해결 모임 합의, 중재 합의 및 적법절차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해당 관할권을 가진 주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을 통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또한 어느 당사자든 분쟁 해결 합의, 중재 합의 또는 적법절차 결정이 양 당사자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주정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GaDOE는 주정부 진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 평가:

평가는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으로 의심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일반적으로 “재평가”라는 용어 사용)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고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현재의 교육적 요구를 결정하기 위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귀하 자녀의 평가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귀하에게 자녀가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적법절차 심의회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사전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와 관련하여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자녀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전면적이고 개별적인 평가를 받을 권리.
2. 의심되는 장애 분야의 전문가를 적어도 한 명을 포함해 여러 전문 분야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을 권리.
3.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해 모든 분야에서 자녀의 평가를 받을 권리.
4. 자격을 갖춘 시험관이 관리하는 적합한 검사를 받을 권리.
5.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 및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련 기능적, 발달적 및 학문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도구 및 기타 요소가 사용되게 할 권리.

6. 자격 및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평가 또는 데이터가 사용되게 할 권리.
7. 기타 사적으로 입수한 평가(유자격 시험관이 실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이 장애아동인지의 여부 및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판단하는 과정에 그 정보가 고려되게 할 권리.
8. 자녀의 모국어 또는 합당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할 권리.
9. 삼년에 한 번 이상 재평가를 받을 권리.
10. 학부모 또는 자녀의 담당 교사가 요청할 경우 삼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을 권리. 하지만 학교 시스템과 학부모가 달리 합의하는 한 재평가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실시되지 않습니다.
11. 학년말로부터 30일보다 일찍 또는 여름에 위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부모 동의를 접수한 후 60(력)일 이내에 최초 평가가 완료되게 하고 자격 결정이 이루어지게 할 권리
  - a. 학교 시스템의 교사 대부분이 계약되어 있지 않은 여름 방학 기간은 이 60일의 평가 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스템은 여름 방학 기간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 b. 공휴일 전, 후의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 기간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오일 연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학교일수는 60일 시한에 계수되지 않습니다.
  - c. 여름 방학 또는 기타 공휴일 기간에 삼 세가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격 결정 및 IEP(해당되는 경우)를 세 번째 생일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12. (a) IDEA에 정의된 장애의 존재 및 (b) 장애가 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서에 근거하여 최초 판단을 위한 자격 결정을 받을 권리.
13. 평가 보고서 및 자격 관련 문서의 사본을 무료로 받을 권리.

참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사전 철회한 경우 신규 위탁은 최초 평가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 최소 제약 환경:

“최소 제약 환경”은 장애아동이 자신의 교육을 위해 적합한 최대 범위까지 비장애 동료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각 아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IEP 팀은 제공될 특수교육 서비스의 환경을 결정합니다. 아동은 정규 교실에서 제공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단, 지원과 서비스를 받아도 그러한 환경이 성공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최소 제약 환경과 관련하여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IEP 팀이 결정하는 합당한 최대 범위까지 자녀가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권리.
2. 특수 학급 또는 별도 학교가 요구되지 않는 한 자녀를 정규 교육 환경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권리. 장애의 특성 및 심각한 정도로 인해 정규 학급에서 제공되는 보완적인 기구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을 정규 학급 환경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더라도 교육 환경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프로그램의 배치를 연속적으로 받을 권리.
4. 자녀가 수업일의 대부분 동안 정규 학급 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 지도실 또는 순회 교육과 같은 보충 서비스를 받을 권리.
5. 자녀의 IEP가 일부 다른 배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자녀가 비장애라면 다닐 학교에 배치 받을 권리.
6. 식사, 휴식, 상담, 체육 및 특별관심그룹 같은 비학과 및 과외 서비스 및 활동에 자녀의 요구에 적절한 최대 범위까지 참가할 권리. 학교 시스템은 각 장애아동이 아동의 IEP 팀이 아동이 비학과 환경에 참여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보완적인 기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리 부모:

“대리 부모”란 학교 시스템의 합당한 노력 후에도 학부모를 확인할 수 없거나 주정부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의 학생을 위해 선임된 사람입니다.

1. 주정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케이스를 감독하는 판사가 IDEA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리인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2. 맥킨리-벤토 노숙인 지원 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42 U.S.C. § 1143a(6))의 725(6) 섹션의 정의에 따라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현지 시스템이 이러한 요건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3. 학교 시스템은 아동에게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현지 시스템의 결정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학교 시스템은 아동이 대리 부모를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아동에게 대리 부모를 배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동의 대리 부모는 아동의 확인, 평가, 교육상의 배치 및 적절한 FAPE의 제공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아동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리 부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되는 학생의 이익과 상충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학생을 적절히 대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3. 해당 아동의 교육과 보호에 관여하는 GaDOE, 현지 시스템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공적 경비로 사립학교 배치:

IDEA는 학교 시스템이 자녀에게 적절한 FAPE를 제공했으나 학부모가 사립학교 또는 시설에 자녀를 배치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 또는 시설에서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자녀의 교육 비용을 학교 시스템이 지불할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위치해 있는 학교 시스템은 IDEA 규정에 의거하여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시킨 자녀에 관해 요구가 해결되는 모집단에 자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1. 아동이 부모에 의해 비영리 사립 초등 또는 중등 학교에 배치된 경우 해당 사립학교가 위치한 학교 시스템은 연방 자금의 비례적 몫의 제공 또는 고려에서 해당 학생을 적격 아동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상기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에 의해 사립 초등 또는 중등 학교에 등록된 경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개인적 자격은 없습니다.
2. 이전에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장애아동이 FAPE 제공에 대한 불합의로 인해 학교 시스템의 동의 또는 위탁 없이 부모에 의해 사립 초등 또는 중등 학교에 등록된 경우 학교 시스템이 그러한 등록 전에 적시에 아동에게 적절한 FAPE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립 학교 배치가 적절하다고 법원 또는 ALJ/심의회 심사관이 판단하면 법원 또는 ALJ/심의회 심사관은 그러한 등록의 비용을 학교 시스템이 부모에게 변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제(2)항에 기술된 변상 비용이 삭감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 a. 공립학교에서 자녀를 이동시키기 전에 학부모가 참석한 최근 IEP 회의에서 학부모가 학교 시스템이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한 배치를 자신들이 거부한다는 사실과 학부모의 우려사항 및 공적 경비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키려는 의도를 IEP 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 b.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이동시키기 적어도 10 영업일 이전에(평일 기준 공휴일 포함) 학교 시스템이 제안하는 적절한 FAPE의 배치를 거부한다는 사실과 학부모의 우려사항 및 공적 경비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키려는 의도를 학교 시스템에 서면 통지했으나 학부모가 그 평가에 응대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 c.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이동시키기 전에, 학교 시스템이 평가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목적의 설명과 함께 자녀를 평가하려는 의도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으나 학부모가 그 평가에 응대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 d. 학부모가 취한 조치를 사법기관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다음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상기 단락(3)에서 언급된 통지를 못 했더라도 배상이 삭감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 a. 학교가 학부모의 통지서 제공을 방해한 경우,
  - b. 학부모가 이와 같은 권리를 통지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 c. 통지서의 요구사항 수락시 자녀에게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5. ALJ/심의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상기 단락(3)에서 언급된 통지를 못 했더라도 배상이 삭감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 a. 학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로 쓸 수 없는 경우, 또는
  - b. 통지서의 요구사항 수락시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 장애아동 징계 절차:

학교 직원은 학생행동규범을 위반하는 장애아동을 연속 십(10)일의 수업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IEP 팀과 상의하지 않고 학생의 현재 배치로부터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환경,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직원은 별개의 비행 사건에 대해 그러한 이동이 배치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한 십(10)일 이내의 추가 이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동이 동일 학년에서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총 십(10)일의 수업일 동안 현재 배치에서 이동된 경우, 학교 시스템은 그 학년에서 이동된 그 후 날짜 동안에 아동이 비록 다른 환경에서라도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아동의 IEP에 명기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진보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행동규범 위반 때문에 장애아동의 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십(10) 수업일 이내에(십 수업일 미만이고 배치 변경이 아닌 경우는 제외) 학교 시스템, 부모 및 관련 IEP 팀원(학부모와 학교 시스템이 결정하는)은 학생의 파일에 있는 정보(IEP 정보 포함), 교사 관찰사항 및 부모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 포함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판단해야 합니다.

1. 문제되는 행동이 아동의 장애에 기인하였는가 또는 아동의 장애에 직접적 및 상당한 관련이 있는가, 또는
2. 문제되는 행동이 학교 시스템이 아동의 IEP를 구현하지 못한 직접적 결과였는가.

학교 시스템, 학부모 및 관련 IEP 팀원이 이러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동은 아동의 장애 발현이라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행동이 학교 시스템이 IEP를 구현하지 못한 결과인 경우, 학교 시스템은 그러한 부족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학생의 장애 발현이라고 판단된 경우 IEP 팀은 기능행동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FBA))를 실시(또는 이미 한 경우에는 검토)하고 향후에 그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위한 행동개입계획(behavioral intervention plan(BIP))을 개발 및 실행(또는 검토 및 수정)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교 시스템이 BIP를 수정하는 일환으로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아동은 이동되기 이전의 배치 환경으로 되돌아갑니다.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비장애 아동에게 적용되는 해당 징계 절차가 귀하의 자녀에게 비장애 아동에게 적용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생은:

- a. 다른 환경에서라도 일반 커리큘럼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IEP에 명기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 b. 아동의 문제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FBA 및 BIP에 관한 서비스 및 수정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1. 자녀가 학교나 학교행사에서 무기를 휴대할 경우, 고의로 불법 마약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규제 약물을 팔거나 판매를 부추길 경우, 또는 학교 구내 및 학교 후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가할 경우, 학교 시스템 직원은 자녀의 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a. 10일 이하의 수업일 기간 동안 적합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 기타 환경 또는 정학(비장애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정도의 대체 조치), 또는
    - b. 비장애 아동의 징계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적합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배치하되, 아동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45일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 대체 교육 환경은 IEP 팀이 결정합니다.
2. 학교 직원은 교육 환경의 배치 변경이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사안별로 특수한 상황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3. ALJ/심의회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해당 아동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이 제(4)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45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자녀의 배치를 IEP 팀이 결정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으로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본 섹션의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자녀가 배치되는 임시 대체 교육 환경은 자녀가 다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합니다.
    - a. 다른 환경에서라도 일반 커리큘럼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IEP가 설정한 목표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 b. 아동의 문제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FBA 및 BIP에 관한 서비스 및 수정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5. 귀하가 임시 대체 교육 환경 또는 장애 발현 판단에 도전하기 위해 제 (1)(b)항 또는 제 (3)항에 기술된 징계 조치 관련 간이 적법절차 심의회를 요청하는 경우, 자녀는 귀하와 주정부 또는 학교 시스템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ALJ/청문회 심사관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제 (1)(b)항 또는 제 (3)항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먼저 도래하는 쪽이 적용됨) 임시 대체 교육 환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간이 적법절차 심의회는 심의회가 요청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심의회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분쟁 해결 모임 회의는 심의회가 요청된 날로부터 칠(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심의회 요청이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의회를 착수합니다. 간이 적법절차 심의회의 결정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6.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지 않았고 학생행동규범을 위반하였지만 학교 시스템이 그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아동은 본 통지서에 기술되어 있는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a.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 시스템이 해당 아동이 장애아동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i. 아동의 부모가 서면으로 감독 또는 행정 직원 또는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경우.
    - ii. 부모가 IDEA에 의거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경우, 또는
    - iii. 아동의 교사 또는 기타 학교 시스템 직원이 시스템의 특수교육 디렉터에게 또는 기타 학교 시스템의 감독 직원에게 직접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 패턴에 대한 구체적 우려를 표명한 경우.
  - b.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 시스템이 모릅니다.
    - i. 학부모가 자녀의 평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또는
    - ii. 아동이 평가를 받았는데 IDEA에 의거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 있는 장애아동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본 문서에 기술된 권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다음의 담당자나 지원 조직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 학교 시스템에 대한 특수교육 책임자

2. 조지아 주 교육부, 특수교육지원서비스본부(주소: The Division for Special Education Supports and Services at the 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Suite 1870, Twin Towers East, Atlanta, Georgia 30334-5010), 전화 번호: (404) 656-3963) 및
3. 조지아 주 지역학습자원시스템(Regional Georgia Learning Resource System(GLRS)) 센터 연락처 정보는 <http://www.gadoe.org/Curriculum-Instruction-and-Assessment/Special-Education-Services/Pages/Georgia-Learning-Resources-System.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규정은 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인 <http://www.gadoe.org/Curriculum-Instruction-and-Assessment/Special-Education-Services/Pages/Special-Education-Rules.aspx>에 게시되어 있습니다.